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. 8. 25 선고 2020가단11928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8. 25.

## 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2. C과 피고 사이에 2017. 7. 3. 체결된 1,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 7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### 주 위 적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예비적 청구 취지

주문 제2항, 제3항 기재와 같다.

## 이유

### 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7. 2. 20. C과 사이에 대여금 4,700만 원, 그중 3,000만 원에 대한 연 10%의 이자를 약정하고, 변제기는 2017. 2.부터 2019. 1.까지 매월 125만 원 변제하고 2017. 7. 20. 1,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C은 2017. 7. 3. 피고에게 1,000만 원을 송금(이하 ‘이 사건 송금’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 요지

C이 피고에게 1,000만 원을 송금한 목적이 대여금이라면 C이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, 위 1,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이 대여에 따른 송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C에 대하여 4,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

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다.

갑 6,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은 2017. 7. 3.경 원고에 대한 4,700만 원의 채무 및 2,937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점, 반면 2017. 7. 3. 적극재산으로는 커피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,000만 원과 위 2,937만 원의 대출채무를 계좌로 입금 받아 예금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, 원고가 C에 대하여 2017. 7. 6.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자 C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하면서 도시가스요금, 건강보험료, 자녀 급식비 등을 연체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고, 법원은 2017. 11. 7. 일부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사실, 원고는 2018. 4.경 C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, 그 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송금일인 2017. 7. 3.경 무자력 상태였다.

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 원고는 위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증여가 아니라고 다투나, 법원에서 피고에게 수차례 위 송금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라고 석명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어떤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,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2017. 7. 3. D은행으로부터 3,000만 원을 차용하고,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29,370,000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자매인 E의 남편인 피고에게 1,000만 원을 송금한 점,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E의 계좌를 압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위 송금행위의 사해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할 것이다.

채무자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책임재산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,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).

달리 피고는 선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, C과 피고 사이에 2017. 7. 3. 체결된 1,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,000만 원 및 이에

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결 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미진